[별지 제2호서식]

청 원 원 문

[청원의 취지]

○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

구분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시	설	5,320	5,543	5,762	5,988	6,150	
정	원	177,318	190,820	203,075	214,683	232,235	
현	원	155,666	164,199	168,157	175,725	179,526	
공	실	21,652	26,621	34,918	38,958	52,709	
공실	₫ (%)	12.21	13.95	17.19	18.14	22.69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정원은 232,235실 이며, 현원은 179,526명으로 공실이 52,709개으로 22.69%입니다. 2023년 노인장기요양시설 공실율은 25%가 예상되며 이것은 5개 사업체중 1개는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원의 이유 및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u>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u> <u>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u>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항(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호(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 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장기요양급여 수요"를 구체적으로 수립할 법규가 필요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3(사업구역별 장기요양기관 총량의 산정 등)를 별첨과 같이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청원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 해당 청원원문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3499

- **제6조의3(장기요양기관 총량의 산정 등)** ① 기초 자치단체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매년 2 회(1월1일과 7월 1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기초 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관내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자치단체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총정원은 제1항의 조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 가. 사업구역내 노인장기요양기관 총정원을 현원(입소인원)으로 나눈 것을 "총정원 충족률"이라한다.
 - 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 결과 총정원 충족률 90% 이 상시 허가하며, 허가 범위는 총정원 충족률 85%를 목표로 정원을 산출한다.
 - 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 결과 총정원 충족률 90% 미만시 불허가 한다.
 - 라. 자치단체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신규 정원은 산출 방법(총량의 산정)은 아래와 같다.

(총정원 × 총정원 충족율) - (총정원 × 0.85) = 신규 정원

- 소수점 이하는 절사 한다.
- 마. 라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신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정원을 지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총정원 및 현원(입소인원)을 조사하며, 법제 3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자료를 요청한다.
- ④ 장기요양기관 총량 산정 조사결과는 연2회(1월 20일, 7월 20일) 공포한다.
- ※ 총량제 도입시 10%~15%의 공실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법 제4조(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항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를 확충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건의 청원서

- 1. 노인복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제5조(청원사항)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임무) 제9조(청원방법) 제11조(청원서의 제출) 규정에 의하여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제21 조(청원의 처리 등)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u>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u>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증 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 3. 개인택시 면허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구역별 택시총량의 산 정등)에 의하여 매년 승차율을 측정하여 개인택시 허가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고하고 있습니다.(최근 수년간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없었습니다. 증차요인이 없을경우, 자차단체에서 규모가 큰 법인택시를 구입하고, 그 수량을 개인택시로 허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의 공공성과,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향후 택시업계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이며, 택시면허방침 계획입니다.

(증 제2호 : 택시발전법 제9조)

4. 전국 장기요양기관 이용 현황 (증 제3호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46쪽/보건복지부)

구분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등급	인정자	670,810	772,206	857,984	953,511	1,019,130	
이용	당자 계	560,391	641,173	712,502	794,809	861,297	
	재가	390,589	462,200	530,633	606,111	666,262	
이 용	비율	69.7	72.1	74.5	76.3	77.4	
- - - 자	시설	169,802	178,973	181,869	188,698	195,035	
	비율	30.3	27.9	25.5	23.7	22.6	

5.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증 제4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자료)

공실		12.21	13.95	17.19	38,958 18.14	52,709 22.69	
공	실	21,652	26,621	34,918	20 050	F2 700	
현	원	155,666	164,199	168,157	175,725	179,526	건강보험공 단공개자료
정	원	177,318	190,820	203,075	214,683	232,235	건강보험공 단공개자료
시	설	5,320	5,543	5,762	5,988	6,150	제3차장기 요양기본계 획46쪽
구분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가. 10인 이상 시설(요양원)

구분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시	설	3,390	3,595	3,844	4,057	4,346	제3차장기요양 기본계획46쪽
정	원	160,594	174,015	186,289	199,134	216,784	건강보험공단 공개자료
현	원	140,607	149,571	153,787	161,968	166,731	건강보험공단 공개자료
공	실	19,987	24,444	32,502	37,166	50,053	
공 실	量	12.44	14.04	17.44	18.66	23.08	

^{*} 시설수와 현원이 소폭 증가, 공실은 2배 이상 증가함.

나. 9인 이하 시설(공동생활가정)

구분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시	설	1,897	1,934	1,881	1,764	1,723	제3차장기요양 기본계획46쪽
정	원	16,724	16,805	16,786	15,549	15,451	건강보험공단 공개자료
현	원	15,059	14,628	14,370	13,757	12,795	건강보험공단 공개자료
공	실	1,665	2,177	2,416	1,792	2,656	
공 실	量	0.99	12.95	14.39	11.52	17.18	

[※] 시설수와 현원이 큰폭으로 감소함

-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그런데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가 입소정원의 95%이상 이어야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정도입니다.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9인 이하, 10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인 미만 시설은 <u>입소정원에 대한 현원이</u> 100% 입소하였을 때 복지시설 대표자 가정이 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u>90%이하 이면 복지시설 대표 가정의 종사자는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구조입니다.</u>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자 상환이 불가능하여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 8. 2023년에는 2022년보다 건보공단에서 요양원에 지급하는 의료수가는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 9. 2022. 8. 31. 개정되어 2023. 1. 1. 일부터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중 입소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 기준이 2.5: 1명에서 2.3: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부터는 입소 어르신 정원이 20명이면 직원이 13명에서 14명으로 증원하도록 되어있고, 이에따른 인건비 보전은 건보공단에서 월 150만원의 인센티브만 제공하므로, 시설에서는 최저인건비가 200만원이고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인건비가 70만원 더 상승 되었습니다.
- 10. 시설은 공실이 발생하면, 14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출하여야 하고,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감소된 인원만큼 감하여 지급하므로, 정원 충족률이 90미만 이면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 부담 4대보험 포함한 직원 보수는 1인당 최저 230만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로 월 350만원 소요됩니다. 입소자가 감소하였다고, 직원을 함부로 퇴사시킬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라서 채용 공고를 하더라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원 정원 충족율 90이상 유지하여 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 11.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본인 소유의 건물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소 9인 시설의 경우 노인복지시설(60평) 투자비로 3억원 이상 소요(3억 대출시 연간 6%이자 18백만원 소요)됩니다. 또한 공실율이 높을수록 영세 사업자는 입소자 및 종사자 구인난으로 경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허가시 최소 공실율 10% 미만으로 유지하여 영세 사업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 12.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어르신을 보호하고, 치매어르신 보호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곳

적 목적으로 세워진 시설입니다.

- 1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통계자료(4번 현황)에 의하면 재가 서비스 이용자는 2018년 69.7%에서 2022년 77.5%로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시설 서비스 이용자는 2018년 30.3%에서 2022년 22.6%로 감소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2027년 목표가 요양시설 서비스 이용자를 2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의하면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한 현원은 2018년** 155,666명, 2022 년에 179,526명으로 5년간 23,860명이 증가하였는데, 공실은 2018년 21,652실에서 2022년 52,709실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15. 50인 이상 대형 장기요양기관이 허가 후 신규 직원 및 입소자 모집시, 소규모 9인 미만 시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유는 요양보호사가 대형시설로 이직하게 되고, 입소 어르신들이 대형시설로 이전하게 되어, 기존 투자한 투자금도 회수 못 하고 파산에 직면하게 됩니다.
- 16. 대형시설은 행정 처벌을 받을만한 위법행위가 있어도, 입소 어르신들을 소산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행정 처분을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17. 대형요양원은 전염병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천춘의 모 요양원은 20여 명이 사망한 바 있다고 합니다.
- 28. 요양시설 임대 허용반대 청원운동을 하고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총량제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임대 허용시 대형요양원 허가신청이 많을 것입니다.
-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항(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호(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지역 특성) 제5호(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총량제를 도입하여 노인의료복지 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022년 12월 기군 정원 232,235실에서 정원 충족율 90% 미만시 불허가하고, 정원 충족율이 90% 이상으로 상승하면 그 시점에서 5% 정원을 계산하여 총량제 정원을 허가하면 전국의 적정 공실이 항상10~15% 유지되므로 안정적인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0. 이것은 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항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는 것과 법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제1항 제2호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

력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법 제6조의2(실태조사) 제1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21. 정부에서는 치매어르신 돌봄정책을 다양하게 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돌보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9인 이하 시설인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정착하기도 전에 대형요양원을 허가하여, 9인 이하 공동생활가정 현원은 2018년 15,059명에서 2022년 12,795명으로 감소 되어 근본정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봉사하여온 9인 공동시설 대표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여야 하는데, 그냥 퇴출하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총량제 도입시 대형 요양시설의 진입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2 용인시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정원수가 수급자를 초과하여 법제31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허가를 동결하였습니다.

23. 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항(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호(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장기요양급여 수요"를 구체적으로 수립할 법규가 필요합니다.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3(사업구역별 장기요양기관 총량의 산정 등)를 별첨과 같이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장기요양보험법 중 총량제 관련 규정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자료 제1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호 : 택시발전법 제9조

제3호: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46쪽(보건복지부)

제4호 : 노인장기요양시설 현원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5호 : 용인시 노인장기요양시설 허가 중단

제6호 : 장기요양보험법 총량제 도입 관련 현행규정

제7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3499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 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걱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3. 장기요양기관애 관한 사항
 -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 5. 29.]
-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2020. 3. 31.>
 -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0. 3. 31.>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3. 31., 2020. 12. 29>
 -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1/2-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신설 2018. 12. 11.>
- 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택시발전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1호, 2021. 7.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4771, 4757

- 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①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 1.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 2. 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 3. 그 밖에 택시운행실태 및 향후 택시를 이용한 수송 수요의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제9항에 따른 산정기준 및 절 차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재산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제5항에 따라 재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기준·절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보고, 재산정 요구의 기간・절차 및 재산정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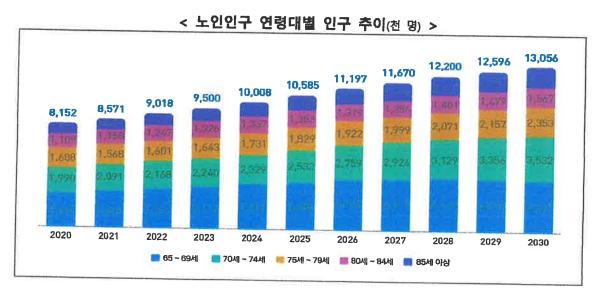
 $[2023 \sim 2027]$

2023. 8.



Ⅱ.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 □ (노인규모)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배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 노인 1천만 명('24)을 앞두고 있으며,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30년 고령화율 25% 도달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 * [65세 이상 인구] ('00) 339만 명, 7.2%(고령화) → ('18) 737만 명, 14.3%(고령) → ('20) 815만 명, 15.7% → ('25) 1,059만 명, 20.6%(초고령) → ('30) 1,306만 명, 25.5%
 - **75세 이상 인구는 '23년 399만 명**(총 인구 대비 7.7%), **'27년 473만 명** (9.2%), **'30년 550만 명**(10.7%)으로 증가 전망
 - * [85세 이상 인구] ('23) 102만 명 → ('27) 137만 명 → ('30) 158만 명



- □ (新노년층) 베이비부터('55~'63년 출생자)의 노년기 진입
 - '20년에 '55년생이 노인인구 진입을 시작하여, '28년에는 모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이 됨
 - * '55~'63년생은 총 6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6% 차지(인구동향조사, '22)
 - 건강·소득 등에서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부양방식, 노인 가구 구성, 서비스 기대 수준** 등에서 변화 전망

□ (수급자) 장기요양 수급자는 101.9만 명으로 노인인구의 10.9%("22)

○ '08년 21.4만 명(노인인구 42%)에서 '22년 101.9만 명(10.9%)으로 지속 증가





○ **전체 수급자는 '27년 145만 명**, 이용자 기준 **재가 66.8만명**('22)에서 **94.9만 명**('27)으로, **시설 19.5만 명**('22)에서 **27.8만 명**('27) 증가 전망

< 장기요양 수급자 전망(만 명, %) >





* 장기요양 단기"23-"27・장기"23-"70 추계(건강보험연구원)

- □ (인프라)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기관 2.1만 개소, 입소시설 6천 개소 등 약 2.7만 개소('22)로, 제도 초기('08. 8,444개소) 대비 큰 폭 증가
 - 이용자 중가 등 고려 시, 주·야간보호기관 약 3.1천 개소, 입소 시설 약 1.6천 개소 등 추가 필요(~'30) 전망
 - **요양보호사**는 **60.1만 명** 근무 중("22), "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 하여 "27년에는 전망치(68.0만 명) 대비 약 7.5만 명 공급 부족 발생

〈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지표 〉

1. 장기요양 수급자 및 급여이용 현황

▶ 장기요양 수급자 현황 추이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정자 계	670,810	772,206	857,984	953,511	1,019,130
1등급	45,111	44,504	43,040	47,800	49,946
2등급	84,751	86,678	86,998	92,461	94,233
3등급	211,098	226,182	238,697	261,047	278,520
4등급	264,681	325,901	378,126	423,595	459,316
5동급	53,898	73,294	91,960	106,107	113,842
인지지원등급	11,271	15,647	19,163	22,501	23,273

▶ 장기요양 이용자 및 급여별 이용현황 추이

(단위: 명, %)

구 분 이용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560,391	641,173	712,502	794,809	861,297
재가급여	인원	390,589	462,200	530,633	606,111	666,262
11.10.4	비율	69.7	72.1	74.5	76.3	77.4
시설급여	인원 169,802	169,802	178,973	181,869		195,035
· · · · · · · · · · · · · · · · · · ·	비율	30.3	27.9	25.5	23.7	22.6

2.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현황

▶ 연도별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제공기관 수

(단위: 개소)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함 계	21,290	24,953	25,383	26,547	27,484
재 가	15,970	19,410	19,621	20,559	21,334
시 설	5,320	5,543	5,762	5,988	6,150

▶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단위: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406,365	451,106	479,253	539,631	601,492
재 가	338,123	378,023	403,200	459,780	516,406
시 설	68,242	73,083	76,053	79,851	85,086

* 여성 비율이 높고(94.3%), 상대적으로 고령인 특성(60대 이상이 62.3%)

3. 연도별 수입·재정지출 현황

(총재정 기준, 단위: 억 원)

2018	2019	2020	2021	2022
60,657	74,977	94,001	115.414	136,605
66,758	81,579			119,941
	60,657	60,657 74,977	60,657 74,977 94,001	60,657 74,977 94,001 115,414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308-0982235

신청일

2023-08-24 12:09:41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내용 장기요양급여 현황 자료 요청

안녕하세요

노인복지에 헌신봉사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 드립니다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현황을 붙임서식에 의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장기요양급여현황.xlsx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접수일

담당자(연락처)

처리예정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1팀)

2AA-2308-0993954

2023-08-24 16:47:08

고태경 (0337361913)

2023-09-01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2023-09-01 15:51:12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 처리결과 (답변내용)

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현황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입니다. 따라서 접속 경로를 안내드리려 합니다.

0 '장기요양등급자수(4급이상) 현황', '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게시경로1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알림· 자료실 > 자료실 > 통계자료실

게시경로2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국민과 함께 >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통계정보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1

위와 같이 게시되어있습니다.

각 시설의 현원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자료로서 이번에 한하여 아 래와 같이 별도 안내드리며

이후, 현원 정보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 페이지(http://www.nhis.or.kr) > 국민과 함께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정보 공개신청 을 통하여 주시기바랍니다.

0공동생활가정 현원(매년 12월 31일 기준)

2017년 : 15,381명 , 2018년: 15,059명 , 2019년: 14,628명 2020년 : 14,370명 , 2021년 : 13,757명 , 2022년 : 12,795명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0노인의료복지시설 현원(매년 12월 31일 기준)(*노인요양시설 기준 현원 발췌 (노인공동생활가정 제외))

2017년 : 131,814명 , 2018년: 140,607명 , 2019년: 149,571명 2020년 : 153,787명 , 2021년 : 161,968명 , 2022년 : 166,731명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께 힘이 되는 든든한 국민건강보험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용인시 고시 제2022-489호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검토자료 고시

1.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심사·의결)
- 2. 시 행 일 : 2022. 10. 28.(금) ※ 고시주기 1년
 - 다음 고시는 관련 법률(자치법규 포함) 개정 및 환경변화시 고시 일정을 변경 할 수 있음
- 3. 해당시설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4. 심사기준

2022.7월말 기준 자료

(다위 · 명)

					(단위·영)
			장기요양		
-	구 분	· 분 노인 인구수		공급	비고 비고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인정자수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원수	
	처인구	40,923	1,994	3,572	
구별 기준	기흥구	61,330	2,489	3,060	,,,,,,,,,,,,,,,,,,,,,,,,,,,,,,,,,,,,,,,
	수지구	51,796	1,766	1,593	

- 5. 기타사항 (입지조건 적용 기준)
 - ① 입지조건 : 해당지역 장기요양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지역 지정가능
- ② 고시 시행일 이전 건축법에 따라 노유자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건축허가 접수 또는 허가를 득한 경우 입지제한이 되더라도 종전의 고시 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설계변경은 허가받은 대지면적 범위 내에서 가능
 -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및 허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시에도 입지조건 포함 적용
 - ※ 노유자시설 중 타용도(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변경 시 입지조건 적용
- ③ 공급이 초과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인 경우 중축에 따른 정원 증가 제한
 - ※ 단, 고시 시행일 이전 건축법에 따라 증축허가를 접수한 경우 가능
- ④ 공급이 초과한 지역 내 소재지 변경에 대한 사항
 - 노후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동일지역(해당구)내 동일정원으로 변경 가능
 - ※ 소재지 변경전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은 운영(추가지정) 불가
 - 소재지 변경시 대표자가 운영계획에 대해 문서로 제출
 - 소재지 변경 이후, 대표자 변경 시 동일정원 적용

용 인 시 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총량제 근거 규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u>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u>
-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 기관에 관한 사항
-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제1 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3499

- **제6조의3(장기요양기관 총량의 산정 등)** ① 기초 자치단체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매년 2 회(1월1일과 7월 1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기초 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관내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자치단체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총정원은 제1항의 조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 가. 사업구역내 노인장기요양기관 총정원을 현원(입소인원)으로 나눈 것을 "총정원 충족률"이라한다.
 - 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 결과 총정원 충족률 90% 이 상시 허가하며, 허가 범위는 총정원 충족률 85%를 목표로 정원을 산출한다.
 - 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 결과 총정원 충족률 90% 미만시 불허가 한다.
 - 라. 자치단체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신규 정원은 산출 방법(총량의 산정)은 아래와 같다.

(총정원 × 총정원 충족율) - (총정원 × 0.85) = 신규 정원

- 소수점 이하는 절사 한다.
- 마. 라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신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정원을 지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총정원 및 현원(입소인원)을 조사하며, 법제 3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자료를 요청한다.
- ④ 장기요양기관 총량 산정 조사결과는 연2회(1월 20일, 7월 20일) 공포한다.
 - ※ 총량제 도입시 10%~15%의 공실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법 제4조(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항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를 확충 할 수 있습니다.

对了多